##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

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, 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 청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청서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6조제8항(종전의 제5항) 본문 중 "30일(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45일)"을 "30일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"를 "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,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요청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①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1.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
- 2. 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
- 3.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
- 4.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거치는 경우
- 5. 소관부서가 다수이고 소관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
- ① 금융당국은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처리절차) ① (생 략)	제6조(처리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은
	배정받은 요청서가 다른 소관부
	서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
	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소관
	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금융감독원은 이첩받은 요청
	서가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이
	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
	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
	소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③·④ (생 략)	<u>⑥</u> ⋅ <u>⑦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
	당관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
	재지정 요청시 재지정 요청 부
	서의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
	<u>할 수 있다.</u>
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	8
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	
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	3Uoj
부터 <u>30일(비조치의견서의 경우</u> 에는 45일) 이내에 별지 제3호	<u>30일</u>
서식(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	
기기(미소시키신시키 경구에는	

별지 제4호서식)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⑥ (생 략)
<신 설>

<신 설>

----- 제5항에 따른 소관 재지정-----

- ⑨ (현행 제6항과 같음)
- ① 금융당국은 다음 각 호의 사 유로 처리기간 내에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 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1.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

   견청취가 필요한 경우
- 2. 제9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경우
- 3.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
- 4.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률자문을거치는 경우
- 5. 소관부서가 다수이고 소관부 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
- ① 금융당국은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회신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문서로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.